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524018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

전 문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김성훈

피고 1. D 주식회사

2. E

3. F

4. G

변론 종결 2019. 10. 10.

판결 선고 2020. 1. 9.

주 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의 표 중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D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액 중,

1)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의 표 중 (가)항의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2) 피고 F은 별지 목록 제2항의 표 중 (나)항의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3)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2항의 표 중 (다)항의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1) :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들에게,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의 표 중 (가)항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피고 F은 같은 표 중 (나)항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피고 G는 같은 표 중 (다)항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의 배우자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 H은 2013. 4. 30.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주주인 피고 E, F, G와 사이에 피고 회사 주식 5,000주를 주식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3. 위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매도인별 구체적인 매매 주식 수량 및 매매가 등은 다음과 같다.

E	3,000주	15,000,000원	300,000,000원
F	1,000주	5,000,000원	100,000,000원
G	1,000주	5,000,000원	100,000,000원
합계	5,000주	25,000,000원	500,000,000원

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H과 피고 E, F, G는 위 피고들이 2016.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주식을 공개(상장)하기로 약정하면서,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H은 피고 회사 및 피고 E, F, G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가액은 H의 매입가액 이상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10조).

다. 1) 피고 E, F, G는 위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 회사의 주식을 상장하지 못하였고, 이에 H은 2017. 9. 22.경 피고들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2017. 9. 26.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주식을 매수할 테니 기다려달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 H은 2018. 3. 9. 다시 피고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피고들은 2018. 3. 27. H이 매수한 가격 5억 원에 연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재매입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책임지고 재매입 하겠으며, 재매입 일자 늦어도 2018년 6월말 내지 8월말까지는 이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그 후 주식 재매입을 미루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 H은 2018. 11. 23. 사망하였고, H의 재산은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의 비율로 법정상속되었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2018. 3. 27. 피고 회사가 제시한 재매입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적용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의 재산상 권리를 상속한 원고들이 피고들이 제시한 재매입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분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이 2019. 5. 13.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위 2019. 5. 13. 피고 E, F, G는 각 아래와 같은 매매대금으로, 피고 회사는 이를 합한 금액을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다(앞서 살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10조에 의하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에 피고 회사도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피고 회사로 하여금 위 피고 E, F, G의 각 매매대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한 이상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피고 회사는 위 피고들과 각 공동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총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보면, 최초 매매대금 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H의 매매대금 완납일인 2013. 5. 3.부터 이 사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체결일인 2019. 5. 13.까지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5. 4.부터 2019. 4. 16.까지 5년 348일의 기간에 대하여 연 3%를 적용한 총 이자 89,301,370원[= 5억 원 × 3% × (5년 + 348일/365일), 소수점 이하 반올림]을 합한 589,301,370원이 총 매매대금이 되고, 그 중 피고 E, F, G가 각 매도 주식 수량에 따라 부담하게 될 매매대금은 별지 목록 제2항의 표 중 각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금액이 된다. 또한 위 각 금액에 대한 원고들 각 지분비율에 따른 금액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제1항의 표 중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제2항의 표 중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는 별지 목록 제1항의 표 중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각 금액 중,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2항의 표 중 (가)항의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피고 F는 별지 목록 제2항의 표 중 (나)항의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피고 G는 별지 목록 제2항의 표 중 (다)항의 '각 원고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 및 각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분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9768호, 2019. 5. 21.) 제2조 제1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9.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특례규정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도영

판사이효은

판사정지원

별지

1) 지연손해금 청구의 기산일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일 다음날부터'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의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선택하기로 한다. 아래 예비적 청구취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